

반성폭력연대회의 공동공약 요구안 및 면담 요청서

발 신 자 :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수 신 자 : 고려대학교 학생처
제출연월일 : 2011. 11. 23.

I. 개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고려대학교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학생들의 자치와 연대로 2011년 6월 22일에 결성되고, 총학생회칙 제31조 제8항에 따라 (광의) 총학생회 산하 특별회의로 승인된 학생 자치 연대체입니다. 지난 5월 21일 발생해서 언론에 공개된 고려대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학내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학교 당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인 출교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을 거부하고자 하는 확고한 학교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의 확고한 징계 결정과 사법부의 처벌 의지 표명으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은 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슷한 사건이 또 고려대학교에서 발생하고 대대적으로 공론화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다시 학교 당국과 학생사회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비슷한 사건들은 이미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가 지난 9월 한 달간 실시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보면 여학생의 7.1%가 학내에서 신체적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전체 추정치를 내면 고려대학교 여학생 510명 이상이 학내 신체적 성폭력의 피해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여학생들이 성폭력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설령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사히 공동체에 돌아갈 수 없다면 성폭력 사건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학생들의 91.5%가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또 있을지 모르는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고려대학교가 성폭력에 대해 가장 진취적이고 앞장선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기 위해 반성폭력연대회의는 다음을 학교 당국에 제안합니다 :

- 1)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
- 2)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의무교육제도 신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한 학교 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후 12월 7일 수요일에 총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II.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

1. 내용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조사위원회 심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면서 더불어 성폭력 정의를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재규정하고 처리 절차에 있어서 학생 대표 측의 참여도 보장하는 방안까지 추가해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각 규정과 시행세칙에 대한 전면개정안은 **별첨 문서**로 첨부되었습니다. 별첨 문서는 전면개정안 전문과 각 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처리 절차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와 학생처를 거쳐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개정됩니다. 제도 개정은 결과보다는 언제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과 포괄적이고 최대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추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 당국 - 양성평등센터 - 반성폭력연대회의 - 총학생회의 4자간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 반성폭력연대회의가 구성하고 있는 진행 상황입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	→	학교 당국 - 양성평등센터 - 반성폭력연대회의 - 총학생회	→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	학생처	→	총장
전면개정안 제출		전면개정안 논의 → 수정 → 확정		승인		승인		승인
2011. 12. 07		2011. 12 - 2012. 2.		2012. 2.				

겨울방학 동안 반성폭력연대회의가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바탕으로 4자간 논의를 거친 뒤, 개강하기 전 최종적으로 전면개정안이 승인이 되면 이르면 내년 1학기 때부터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I.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의무교육제도 신설

1. 개요

설문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는 성 인식을 나타낸 반면 90% 이상의 구성원이 성폭력 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 반면 매우 극소수만이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차원의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방법

모든 구성원에 대해 한 학기에 1번 내지 1년에 한번 성폭력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추가해서 졸업할 때까지 총 8번 내지 4번 성폭력 교육을 받게 만들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1) 양성평등센터 차원에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한 학기 기간 동안 하루 2차례씩 인문계 캠퍼스와 자연계 캠퍼스에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수강할 수 있는 성폭력 교육 강좌를 매일 개최합니다. 하루 총 4차례(인문계 2번, 자연계 2번)씩 강좌가 열리게 되어 일주일에 총 20번, 한 학기에 총 200번(실제 수업하는 기간을 10주로 잡음)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도교수와의 면담과 같이, 수강신청에 성폭력 교육 이수를 추가해서 이를 학기 내 이수하지 않을 시 학기 진급 내지 학년 진급이 안 되도록 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신청한 학기 중 1번 내지 1년 중 1번 온라인으로 자기가 수강할 수 있는 시간에 성폭력 교육 강좌 수강을 신청해서 해당 시간에 들어가 강좌를 수강하면 됩니다. 이를 수강할 경우 Pass가 되며 학기 중 내지 1년 중 이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Fail이 되어 P/F 제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3. 일정

신설이 확정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강사를 확보해서 2012년도 입학생부터 이를 졸업요건으로 넣어서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IV.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와 반(反)성폭력

1. 학교 교육의 한계

학교 차원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확보되는 인식 변화는 최소한의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더구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년 내내 교육 강화를 수강하도록 하긴 했으나 그것이 많아야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일상적 차원의 교육이 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학생사회의 몫이 될 것입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는 학생사회가 적극적으로 반(反)성폭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을 상대로 만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사회에게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 학생사회 자체의 역량 확보

설문조사 결과 학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학생은 100명 단위가 넘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양성평등센터에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학생사회 자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란 가해자의 징계나 처벌과 같은, 학생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반성을 유도한다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과 같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공동체가 맡을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사건 처리를 맡을 수 있는 학생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과/반 단위 학생사회는 해체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과/반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앞으로 각 과/반 대표자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대화한다거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차차 반(反)성폭력의 일상화가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3.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도입

한편 당장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을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반성폭력연대회의는 무엇이 성폭력이며, 성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자치규약에는 특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해서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는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연대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치규약 확정 → 단과대 운영위원회 설명 → 새내기 배움터에서 홍보 → 공청회 개최	➤	통과	➤	통과
2011. 12. - 2012. 3.		2012. 3.		2012. 3 - 2012. 4.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은 별첨 문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V. 별첨 문서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안
2.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개정안
3.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안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개요

최근 일어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집단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차적인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으며 이외에도 포괄적인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세 가지 점을 중점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성폭력 개념 사용, 둘째, 더 세밀한 피해자 보호, 셋째, 학생대표 참여 보장.

본 개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1. 6. 15. 제정
2003. 1. 1. 개정
2003. 9. 1. 개정
2005. 6. 24 개정
2006. 10. 10. 개정
2011-20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1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고지하는 행위
 3.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정 성별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
 5.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6.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이라 함은 고려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 ③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라 함은 성폭력 사건이 인지된 후부터 해결될 때까지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이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조사위원회 위원 전부가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가 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구성원 또는 고려대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 4 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 (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한다.

제 7 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6조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이 규정을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담당기관

제 8 조 (성폭력상담소) ①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종캠퍼스에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소 내에는 성폭력 처리부서 및 성폭력 관련자 상담부서 그리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서 등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9 조 (업무) 상담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
3. 성폭력 사건의 조사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단에 관한 업무
7.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10 조 (구성) ① 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상담소장을 둔다. 상담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실장(전임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실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소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재정 및 운영) ① 상담소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② 상담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수입·지출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상담소센터의
운영 제반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제 12 조 (운영위원회) ①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상담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라 한다.)

제 13 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4 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상담소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 상담실장,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5인의 학생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⑤ 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조사위원회

사항별로

사건대응작업
~마지막에 조사위원회를

제 15 조 (조사위원회)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6 조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상담소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 사항을 요청한다.
상담소장이 징계수위를 결정.

제 17 조 (구성) ① 조사위원장은 상담소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② 조사위원장은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되, 1인 이상의 학생대표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학생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사위원장이 선임한다.

1.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관련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자

④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로 한다.

제 5 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 18 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제3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상담소가 스스로 피해를 감지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신고접수 및 조사위원회 회부) ① 상담소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의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상담소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③ 상담소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④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 당사자와 피신고자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제 6 장 조치 및 징계

제 20 조 (조치)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근 금지

6. 가해자의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

7. 가해자의 공개 실명 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

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실명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를 할 수 있다.

8. 이 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 21 조 (징계) ①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징계기

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리

2. 학생 : 학칙 제57조에 의한 징계처리

② 제20조의 조치는 전항의 징계 요구 내지 발의와는 별개로 내릴 수 있다.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0조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④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0조의 조치를 내리거나 전항의 징계를 요구 내지 발의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징계를 발의 내지 재발의해야 한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상담소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가해자가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자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가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 내지 신고자에 대한 신원노출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거나 피해자, 대리인 내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 23 조 (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부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본 개별 조항의 개정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

현행 규정	개정안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성폭력을 성희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현행 규정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정의상으로만 구별하고 있을 뿐 적용해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성희롱과 성폭력을 따로 적는 것이 자칫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의 개념 구체화

목적

현행 규정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 본 규정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처리 절차 등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규정이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다 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정의

현행 규정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1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지시하는 행위 3.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정 성별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 5.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6.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이라 함은 고려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⑤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라 함은 성폭력 사건이 인지된 후부터 해결될 때까지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이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조사위원회 위원 전부가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가 된다.
--	---

개정 이유 : 성희롱과 성폭력을 따로 정의해놓은 본 조항과는 별개로 기타 조항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며,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특정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성폭력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보통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아닌 ‘정의’로 조항을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항 설명을 ‘정의’로 바꾸었으며, 각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인 만큼 ‘고려대학교의 구성원’과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정의 또한 본 조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적용범위

현행 규정	개정안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구성원 또는 고려대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4조 (적용범위) 고려대학교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고려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이유 : 고려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고려대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제3자의 경우 고려대학교 측에서 포괄하여 사건을 다루는 것이 사건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되므로 제3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는 정의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신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신설 이유 :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가 용촉되고 쉽고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힘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보다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원칙이 애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다.

피해자 보호 (이동)

현행 규정	개정안
제12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u>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u>	제5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6조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이 규정을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동 및 개정 이유 : 피해자 보호 등은 본 규정을 총괄하는 원칙 부분에 대한 서술이자 각종 권리 의무의 서

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 앞에 놓는 것이 범구조상 더 적합하다.

피해자의 진술거부권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권리 조항과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조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조항 체계상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는 데 용이하다.

피해자의 기피 신청 등은 피해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피해자가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한정지었다.

담당기관 개괄

현행 규정	개정안
제5조 (양성평등센터) ①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서창캠퍼스에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 내에는 성폭력 처리부서 및 성폭력관련자 상담부서 그리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서 등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8조 (성폭력상담소) ①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종캠퍼스에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소 내에는 성폭력 처리부서 및 성폭력 관련자 상담부서 그리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서 등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이유 : 현행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는 업무가 성폭력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구성원들에게 본 기관의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성폭력상담소'로 하는 것이 낫다. 또, 본 기관이 교수/직원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수도 있으므로 본 기관이 독립된 기관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창캠퍼스'의 명칭이 '세종캠퍼스'로 바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기관 업무

현행 규정	개정안
제6조 (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3. 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제9조 (업무) 상담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 3. 성폭력 사건의 조사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5.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폭력예방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7.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이유 : 기관명을 '성폭력상담소'로 바꾸는 것에 따른 부수적 개정이다.

담당기관 구성 및 운영

현행 규정	개정안
제7조 (구성) ①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상담실장(전임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실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구성) ① 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상담소장을 둔다. 상담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실장(전임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실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소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재정 및 운영) ①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수입·지출 및 업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재정 및 운영) ① 상담소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② 상담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수입·지출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이유 : 기관명을 '성폭력상담소'로 바꾸는 것에 따른 부수적 개정이다.

운영위원회

현행 규정	개정안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라 칭한다.) 제10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상담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라 한다.) 제13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상담소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 상담실장,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5인의 학생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⑤ 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이유 : 본 기관이 다루고 있는 업무가 학생사회와도 직결되는 면이 있는 만큼 학생 대표자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 대표자 5인은 총학생회, 여학생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에 서 각 1인, 그리고 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2인이 나오는 것으로 하면 대표성과 균형 모두 보장될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자의 참여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의 수는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이 나을 것이며, 11인 내외로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유동적인 구성을 허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15인으로 고정하

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시행세칙의 효력을 명시했다.

조사위원회 (이동)

현행 규정	개정안
제16조 (조사위원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제16조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상담소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18조 (구성) ①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이하 “위원장”은 조사위원장을 칭함)	제17조 (구성) ① 조사위원장은 상담소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이하 “위원장”은 조사위원장을 칭함)
②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되, 1인 이상의 학생대표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학생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관련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함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책임자로 판단한 자 ④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

이동 및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먼저 조사위원회를 언급한 뒤, 조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규정을 접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내 성폭력 사건이 학생과 관련한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 학생 측에서도 역시 최소 1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보장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추가했다. 학생대표 1인은 여학생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피해신고 및 접수

현행 규정	개정안
제14조 (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센터에 신고한다.	제18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제3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제15조 (신고접수 및 조사위원회 회부) ① 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가 스스로 피해를 감지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센터의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센터장(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성희롱 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19조 (신고접수 및 조사위원회 회부) ① 상담소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인지한 경우	② 상담소의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상담소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④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2.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⑤ 센터장은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	③ 상담소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④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

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은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 당사자와 피신고자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	--

개정 이유 : 신고한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시행세칙이 아닌 규정 차원에서 명시해 놓는 것이 나으며, 상담소가 스스로 감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너무 무리 있는 규정 적용을 피할 수단도 마련해 놓았다.

조치 및 징계

현행 규정	개정안
제19조 (조치)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20조 (조치)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근 금지 6. 가해자의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 7. 가해자의 공개 실명 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 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실명사과문, 반성문 내지 각서를 할 수 있다. 8. 이 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제20조 (징계)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리 2. 학생 : 학칙 제57조에 의한 징계처리 ② 센터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①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징계

1. 가해자 공개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설명사과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3. 사회봉사 프로그램 4. 금전적 피해보상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22조 (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리 2. 학생 : 학칙 제57조에 의한 징계처리 ② 제20조의 조치는 전항의 징계 요구 내지 발의와는 별개로 내릴 수 있다.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0조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④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0조의 조치를 내리거나 전항의 징계를 요구 내지 발의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징계를 발의 내지 재발의해야 한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상담소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가해자가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자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가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 내지 신고자에 대한 신원노출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거나 피해자, 대리인 내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23조 (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소에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개정 이유 :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와 징계까지 요구 내지 발의할 수 있는 경우의 구분이 사실상 없으며, 지나친 중복 규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예 본 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항을 분할해 놓았다. 또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시했다. 또, '보상'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배상'으로 바꾼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개정안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개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변경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시행세칙에 대한 전면 개정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조사위원회의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해당 기간을 더 짧게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줬다. 더불어 운영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본 개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03. 1. 1. 제정

2003. 9. 1. 개정

2006. 10. 10. 개정

2011-2012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고려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그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피해자의 권리) ①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

② 피해자는 특정 조사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용모 등을 포함한 신변관련 사항, 사건관련 자료, 인상착의 등 그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4 조 (절차 비공개 원칙) 사건의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조 (신고 방법) 신고는 서면, 전화, E-mail,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 6 조 (신고 조서 작성) 신고 면담 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보호) ①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상담)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인 전문상담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외부 의뢰)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상담소장 및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소환방법)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신고자 및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전화, E-mail 등을 보내어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환 요청 시 당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자임을 설명한다.

③ 전화, E-mail 등을 통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제 11 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상담소장, 상담실장, 전문상담요원, 행정조교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 당사자, 참고인,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 신고자, 피신고자는 당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떠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언행,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피신고자가 조사 및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14조의 당연직 위원 4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전임교원 내지 전임직원 5인, 총학생회장 내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여학생위원회 대표 내지 여학생위원회 대표가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대학원총학생회장 내지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이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재학생 2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② 전임교원 내지 전임직원 5인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규정 제17조의 위원장, 여학생위원회 대표 내지 여학생위원회 대표가 추천하는 1인, 위원장이 규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3인으로 구성된다.

② 조사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14 조 (심리진단 및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피해자(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피신고자의 비용 부담의 자력이 부족할 때 혹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한다.

② 피해자(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정신과적인 심리진단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재) ①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② 상담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3자를 위촉하여 중재하게 할 수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 사항을 가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재자와 더불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③ 중재자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가해자가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과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1항 각 1호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제 17 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조사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 조사심의까지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요청이나 필요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최종 45일 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장으로 제3자가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심의 결과를 상담소장

에게 통보한다.

⑥ 상담소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시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⑧ 가해자가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 18 조 (징계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의 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조치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피해자는 이 경우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상담소장은 가해자가 제심의 요청 없이 조치 사항 및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사건의 공개 및 공개 사과는 하네 게시판, 홈페이지, 고대신문 등에 해당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상담소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상담소 내지 상담소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⑧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 심각성과 가해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⑨ 상담소장은 피해처리 및 조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⑩ 상담소장은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 하에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수 있다.

⑪ 성폭력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사건처리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행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 내지 발의하거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⑫ 상담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정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 조 (위원회 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 피해자(피신고자)와의 면담 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폭력 관련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 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한다.

다음부터는 현행 시행세칙과 비교해본 개별 조항의 개정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

현행 시행세칙	개정안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이유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다.

목적

현행 시행세칙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3호에 근거하여 고려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그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세칙을 만들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개정을 반영했다.

피해자 보호

현행 시행세칙	개정안
제2조 (피해자 의사 존중 및 피해자 보호)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반, 이름, 주	제2조 (피해자의 권리) ①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 ② 피해자는 특정 조사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소, 전화번호 등 신변관련 사항과 사건관련 자료,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양성평등센터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⑤ 사건처리를 위한 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용모 등을 포함한 신변관련 사항, 사건관련 자료, 인상착의 등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피해자는 특정위원회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⑦ 피해자는 사건의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다.	제4조 (절차 비공개의 원칙) 사건의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이유 : 피해자의 권리와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의 의무 규정을 나눴으며 절차 비공개의 원칙을 개별 조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변보호의 권리를 명시해놓았다.

신고 및 상담

현행 시행세칙	개정안
제3조 (신고인 및 피신고인 보호) ①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신고 방법) 신고는 서면, 전화, E-mail,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고 조서 작성) 신고 면담 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를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 등) ①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에서, 센터장 및 상담실장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보호) ①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상담)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인 전문상담요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가

② 신고 면담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남성인 경우 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외부 의뢰)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상담소장 및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개정 이유 :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을 추가했고, 상담 시 동성의 전문상담요원 참여 보장, 외부 의뢰 시의 규정 등도 추가했다.

소환

현행 시행세칙	개정안
제5조 (소환방법) ① 피신고인 및 사건관련자에게 전화, E-mail을 통하여 본인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② 면담 요청시 성폭력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한다. ③ 전화 및 E-mail을 통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센터장, 상담실장, 전문상담원, 행정조교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그리고 사건처리 관련자는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당해 사건 관련자의 신원 노출을 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피신고인이 조사 및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한다.	제10조 (소환방법) ①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신고자 및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전화, E-mail 등을 보내어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환 요청 시 당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자임을 설명한다. ③ 전화, E-mail 등을 통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상담소장, 상담실장, 전문상담요원, 행정조교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 당사자, 참고인, 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 신고자, 피신고자는 당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떠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언행,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피신고자가 조사 및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한다.

개정 이유 : 조항 번호 변경 및 몇 가지 용어를 보다 명시적으로 바꿨다.

위원회의 구성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신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14조의 당연직 위원 4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전임교원 내지 전임직원 5인, 총학생회장 내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여학생위원회 대표 내지 여학생위원회 대표가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대학원총학생회장 내지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1인, 이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재학생 2인,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② 전임교원 내지 전임직원 5인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규정 제17조의 위원장, 여학생위원회 대표 내지 여학생위원회 대표가 추천하는 1인, 위원장이 규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3인으로 구성된다. ② 조사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신설 이유 : 성폭력상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비용 지원

현행 규정	개정안
제7조 (심리진단 및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피해자(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 (심리진단 및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피해자(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지원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비용 부담의 자력이 부족할 때 혹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 해책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피신고자의 비용 부담의 자력이 부족할 때 혹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한다.
② 피해자(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정신과적인 심리 진단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자(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정신과적인 심리 진단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이유 : 용어 변경 등이 있었다.

중재

현행 규정	개정안
제8조 (중재) ①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한다. ②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가해자가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중재 위원을 위촉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로부터 발생한 합의사항을 가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제15조 (중재) ① 상담소장 혹은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② 상담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3자를 위촉하여 중재하게 할 수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사항을 가해자가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재자와 더불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③ 중재자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가해자가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개정 이유 : 조항의 체계성을 위해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를 바꿨다.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동)

현행 규정	개정안
제10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있었던	제16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학과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② 피해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①항의 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회피할 수 있다.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과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1항 각 1호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

이동 및 개정 이유 :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심의보다 먼저 밝혀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이동했으며 가해자의 기피 신청 또한 보장했다. 제척 사유에 조사위원이 사건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유도 추가했다.

조사 및 심의

현행 규정	개정안
제9조 (조사위원회 조사 및 심의) ① 조사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 조사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요청이나 필요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장으로 제3자가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심의 결과를 양성평등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⑥ 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시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	제17조 (조사위원회 조사 및 심의) ① 조사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 조사심의까지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요청이나 필요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최종 45일 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장으로 제3자가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심의 결과를 상담소장에게 통보한다. ⑥ 상담소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시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

할 수 있다. ⑧ 가해자가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하여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할 수 있다. ⑧ 가해자가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

개정 이유 : 60일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들어옴에 따라 이를 30일로 줄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45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징계 및 조치

현행 규정	개정안
제11조 (징계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요구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複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징계 조치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피해자는 이 경우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센터장은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조치사항 및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의 공개 및 공개사과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센터 혹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⑧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⑨ 센터장은 피해처리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조 (징계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의 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조치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피해자는 이 경우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상담소장은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조치사항 및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을 공개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의 공개 및 공개 사과는 학내 게시판, 홈페이지, 고대신문 등에 해당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상담소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상담소 내지 상담소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⑧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 심각성과 가해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⑩ 센터는 규정 제12조의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상에 공개한다. ⑪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상담소장은 피해처리 및 조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⑩ 상담소장은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 하에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수 있다. ⑪ 성폭력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행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 내지 발의하거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⑫ 상담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개정 이유 : 공개 방법을 추가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명시했다.

위원회 수당

현행 규정	개정안
제12조 (위원회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이유 : 조항 번호 변경이다.

기록 및 자료보존

현행 규정	개정안
제 14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 피신고인과의 면담 시 면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폭력관련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센터는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제20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 (피해자)피신고자와의 면담 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폭력 관련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 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한다.

개정 이유 : 최소 보존 기간을 명시했다.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1. 목적

표준 자치규약이라는 하나의 낯선 이름과 형태로 처음 반성폭력을 접하는 길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반성폭력 자치규약에서 중요한 것은 조항의 짜임새나 문구 하나하나의 확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자치규약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진 성별이 대화와 이해, 토론과 관계맺음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다양한 성별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차별을 넘어, 상호작용하는 각자가 각자를 존중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2011년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서 반성폭력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고려대학교 학내 성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한 달 동안 고려대학교 구성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여학생의 7% 이상이 학내에서 신체적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여학생의 23% 이상이 언어적 성폭력을 학내에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과정에서 짧은 옷을 입거나 술에 취한 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도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을 긍정한 남학생의 숫자는 여학생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에 육박하는 남학생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폭력 실태와, 관련된 대책 마련 사이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바로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존재입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가 없더라도,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학생 공동체에 속해 있든 바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합니다. 나아가,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학생사회에서, 과/반에서, 동아리에서, 각 학생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반성폭

력/성평등 내규/자치규약을 만드는 데에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성격을 띤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 및 요구를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강간이나 강간 미수, 강제추행,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 따르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성적 요구,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행위, 발언, 특정 성별에 따른 분업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주체적으로 향유하고, 자기 몸에 대한 각종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성적 욕구, 욕망, 환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도구로서, 성적 대상으로서 물건처럼 다루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바로 일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 중 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던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가해자도 다름 아닌 '선배'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이 일상적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그 처리 과정도 그 공동체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공동체에 요구하는 데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은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구체적 관계 속에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나열하는 성폭력의 유형이 모든 성폭력을 다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성폭력을 짚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적 성폭력

- 강간, 강간 미수, 강제추행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 및 그 시도 또는 요구
예) 특히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는 이유로 시도하는 스킨십, 또는 스킨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 됩니다.

▷ 물리적 성폭력

- 상대방의 몸을 오래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가슴이나 다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에 대한 요구
예) FM의 에로틱 버전이나, 술자리 벌칙의 일종인 러브샷은 필연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몸을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방식으로 향유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성별의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
예) 다른 성별 고유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다른 성별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 특정 성별에 대한 술 따르기 요구
예) 후배 여학생에게 선배 남학생의 술잔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성적 역할을 고정시키는 행위로서 역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별에 상관없이 술을 강권하는 행위 자체를 지양해야 합니다.
- 특정 성별에 따른 술자리 배치
예) 여성을 남성 사이에 앉힌다든지, 특정 성별이 소수인 경우에, 특정 성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리를 따로 배치한다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의 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문제가 됩니다.
- 특정 성별 내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예) 포르노물을 벽에 붙이거나 그려놓는다거나, 음담패설을 눈에 띄는 곳에 적어놓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게시물들을 올리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 언어적 성폭력

- 성폭력을 정당화 하는 발언
예) 남자가 욕구가 있으면 성폭력을 할 수도 있다거나, 그런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기 마련이라고 말한다거나, 성폭력은 결국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말하는 등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발언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신체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음담패설
- 특정 성별 내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
예) 여자는 가슴이 중요하다, 여자가 화장도 안 하나,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더 잘 내릴 수 있다, 게이들

은 다 쓰레기다 등의 발언은 특정 성별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특정 성적 지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문제가 됩니다.

▷ 성별 분업의 요구

성별 분업이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이 다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미리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나누거나, 여성의 노동능력을 미리 단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여성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거나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특정 성별에게 일을 구분하여 전담하는 행위

예) 무거운 짐은 무조건 남자가 들어야 한다고 하거나, 남자가 그런 것 하나 들지 못하냐고 하는 행위, 설거지나 청소 등은 여자에게 전담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특정 성별에게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언행

예) 꼭 일이 아니더라도, 여자가 애교를 부려서 분위기를 띄워보라고 한다거나, 남은 음식은 남자들이 해치우면 된다고 한다는 등의 언행도 문제가 됩니다.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왜곡된 성적 통념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리어 책임을 돌리려는 행동이나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언행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언행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공개, 발설하는 언행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언행

4. 적용범위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학생회, 과/반,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의 공동체 구성원 혹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제3자, 예컨대 교환학생 등이 성폭력 사건의 쌍방 내지 일방 당사자일 때 적용됩니다. 다만 각 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치규약이나 내규를 구비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행히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곁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당연히 각종 권리의 주체이며,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일상적 권리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 증상들을 표현할 권리
- 피해 후 증상들로 인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 공동체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권리

-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권리
- 대리인이나 대변인을 선임할 권리
- 사건의 전부 내지 일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을 권리
- 사건을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
- 주소, 성별, 용모, 소속, 기타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보호받을 권리
- 가해자로부터 접근당하지 않을 권리

6. 각 학생사회 및 학생 공동체의 의무

▷ 각 성별 고유 공간에 대한 보장 의무

각 성별에 따라 예민한 신체적 부위가 다르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성별이 같이 숙박할 경우,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숙소 이용 시 각 성별에 따른 고유 공간 마련
- 옷을 갈아입는 경우 각 성별의 고유 공간 보장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각 학생 공동체에 여성국, 여성부 등을 두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1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집행원 등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담당 집행원은 특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MT나 수련회 등의 행사를 갈 경우 성별에 따른 업무 배정이 아닌 당번제에 따른 업무 배정
- 여성부, 여성국, 여성주체 등의 마련
- 각종 행사 집행원에 대한 반성폭력 교육 내지 여성주의 교육 이수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배정 및 해당 연락처 공고

▷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준수 의무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준수는 모든 학생 공동체에 요청되지만 특히 학생대표자, 학생회 등에게 요구됩니다. 학생회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집행하는 주체이자 책임자입니다.

- 각종 행사, 특히 새내기 배움터, 현장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 자치규약 내용을 1회 이상 교육
-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이 자치규약을 구성원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행사 1주 전부터 행사 종료 시 까지 게시

7. 성폭력 사건의 처리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나 여건이 안 될 경우 학내 기관이나 기구 중 양성평등센터, 여학생 위원회, 학외 기관 중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소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사건 처리 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각 기관이나 기구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 공동

제는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기존의 시각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분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경험과 감정이 배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원칙

예) 피해자에게 1차적인 발언권을 보장해주고,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발언권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구체적 사건이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있었는지 등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감정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성경험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성적 쾌감을 느꼈는지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이 원칙에 포함됩니다.

- 피해자 보호의 원칙

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구성

- 가해자 소속단위 1인
- 여성주체
- 해당 단위 집행위원장
- 피해자 대변인

▷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역할

-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해결과정 추진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재교육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단 그 수위와 범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
- 피해자의 치유과정에 대한 노력

▷ 피해자의 보호

- 신고 접수에서 사건 해결 및 공론화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 최소화
- 피해자의 동의 없는 피해자의 주소, 성별,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 공개 방지
- 피해 사실 은폐 요구 방지

▷ 대책 마련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가해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조자란, 가해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음이 조사 및 심의 결과 드러난 자를 뜻합니다.

- 가해자와 그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실시
- 가해자와 그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교육 실시
- 가해자와 그 동조자들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할 것을 권고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일정기간 금지

▷ 관련 연락처

성폭력이 발생했고, 사건 처리를 원할 경우 사법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 성폭력 사건 전문 요원이 없을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체에 여성부, 여성국, 여성주체 등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상의해서 학내 기관 및 기구, 학외 기구 등에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하며, 만일 하나 해당 공동체에 담당자가 없을 경우 아래 전화 번호로 최대한 빨리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 02-3290-1700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 010-2880-8885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한국여성의전화 : 02-3156-5400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739-8858